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9154
----------	-------

제안연월일 : 2019. 3.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05690호)	송옥주	2017.2. 17.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7.9.14)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0737호)	송옥주	2017. 12. 8.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8.2.6)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1306호)	박순자	2018. 1. 8.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8.8.28)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2059호)	임이자	2018. 2. 21.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8.8.28)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2487호)	송옥주	2018. 3. 15.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8.8.28)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3759호)	채이배	2018. 5. 25.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8.8.28)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4137호)	임이자	2018. 6. 29.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18.11.22)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4279호)	신보라	2018. 7. 9.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18.11.22)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4984호)	송옥주	2018. 8. 21.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18.11.22)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8843호)	신창현	2019. 2. 26.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로 직접 회부

나.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19. 3. 11.)에서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9. 3. 12)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1군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 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역시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 차량의 운송사업자가 해당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열악한 실내공기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추가하도록 하고,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서는 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이외에도, 열악한 실내공기질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함(안 제3조).

나.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조의7 등).

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

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등).

마. 환경부장관이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4 등).

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록한 내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사.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4. 부대의견

가. 환경부는 현행법 시행령의 면적기준에 따라 현행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430㎡ 미만의 시설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것.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 중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제4조의5제1항 전단 중 “필요하면 실내공기질”을 “실내공기질”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7의 제목 중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하고, 제4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

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를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중교통차량”을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8호의2,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제출·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기록·보존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7제3항, 제16조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역사의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제4조의7제2항에 따른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2021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2.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 25. (생략)	13. ~ 2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 ----- ----- -----실내공기질----- --실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② -----공
-----공
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③·④ (생략)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

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5(지하역사의 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u>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 ----- ----- ----- ----- --10년-----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u>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	② ----- ----- -----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 ----- -----

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

③ -----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

⑥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⑦

제6항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
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공개하
여야 한다.

③ _____

_____.

1.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신 설> 1. ~ 7. (생략)	<u>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u> 3. <u>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기록·보존·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기록·보존·제출한 자</u> 4. ~ 10.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	---

